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. 11. 24 선고 2020가단8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법정대리인(친권자모) H

7. I

변론 종결2020. 11. 10.

판결 선고2020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 중 피고 B는 3/11지분, 피고 C은 6/55지분, 피고 D은 4/55지분, 피고 E은 2/11지분, 피고 F은 1/11지분, 피고 G은 1/11지분, 피고 I는 2/1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5. 10. 14. 접수 제20960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가. 피고 B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나. 피고 C, D, E, F, G, I: 불출석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남인수

별지